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저작권 보호 상담 ☎ 1588-0190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1602) 4, 9, 10층
Tel 1588-0190 Fax 02-3153-2709 www.kcopa.or.kr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이용 안내

1.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접수되어 처리된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와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2. 현행 저작권법과 기타 법령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사례별로 안내된 바와 같이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의 귀속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은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법령 개정 및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4. 본 사례집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기타 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 [정보자료] → [자료실])을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 바로 알기

☑️ 저작권이란? • 14

1. 저작권 • 14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2. 저작인접권 • 16
3. 저작권의 발생 • 16

☑️ 저작권 기본개념 • 18

1. 저작물
2. 저작물의 예시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저작물 이용절차 • 19

1. 이용원칙 • 19
2. 이용절차 • 19
3.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 20
4.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 20
CC라이선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2장 열린상담실 주요 상담 사례

☑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 • 24

1. 역사적 사실의 저작물성 판단 및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24

저는 역사와 관련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역사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관련도서, 논문, 민간설화 등을 필수적으로 참조하고 삽입해야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전형적인 디자인의 저작물성 • 30

음식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흔하게 판매되는 사탕디자인(옥춘사탕)을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레시피와 사진, 영상의 표절 • 32

식품기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업 제품을 사람들이 맛있고 재미있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리 영상과 이미지 사진을 촬영해 SNS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늘 먹는 친숙한 음식을 더 예쁘고 맛있게 만든다는 컨셉이라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에 공개하고 있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참고하자는 기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표절로 저작권 침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팀 내부에서는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작권보호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시놉시스,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법 • 34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투고, 공모전 출품 등의 단계에서 완성 시나리오가 아닌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미완성 작품이 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제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도용하였을 때 제가 저작자임을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저작권자 • 36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여 제작 및 공개를 앞두고 있던 연구 자료의 담당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발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기관에선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자료였으므로 그 피해를 심각하게 보아 법적대응을 고려중인데, 저작권법상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 ‘팬 아트’와 저작권 문제 • 39

저는 아마추어 일러스트작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팬으로서 경기와 특집방송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SNS에 올렸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교내행사 안내와 응원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하며 제 그림을 무단으로 삽입하였습니다. 학교 측에 연락하니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임의로 진행한 일이라고 하며, 비상업적인 목적인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7.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외국저작물의 보호 • 41

공모전 출품을 위해 ‘피터 팬’을 이용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 ‘피터 팬’은 작가가 1937년에 사망했으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8.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43

영리목적의 출판물에 사진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사진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957년 제정 당시에는 사진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창작한 후로부터 10년간만 보호했다가, 1987년부터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행 저작자 사망 후 70년).

(1) 그렇다면 1977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작가가 사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각 기관에 1950년 이전에 생산된 많은 사진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료로 구입한 것도 있고, 무료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각 기관에서 문서로 사진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출처 및 저작권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반드시 표기하고, 출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간된 출판물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이라면 각 기관은 어째서 저작권과 출처 표시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9.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 46

최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후 기증 형태로 많은 미술품이 공개되고 있는데, 각 미술품의 소유권으로 분쟁이 있는 한편 저작권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 우선,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2) 화가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 (3)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10. 저작물의 거래와 저작권 • 48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 읽고 중고로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팔아도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책을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11.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법정허락제도 • 50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만화책과 관련하여 언론사 측에서 해당 작가의 소개를 위하여 만화책의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자는 1990년대에 이미 사망하였고, 유산이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족의 연락처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허락을 문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 52

초등학교 음악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려주고, 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고 표현하여 보는 학습활동을 기획중입니다. 음악 파일을 e학습터에 올려 미리 듣고 오도록 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13. 수업목적 이외의 교내 저작물 이용 • 54

초등학교 학부모회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트잇에 동시를 인쇄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동시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현장 캠페인에서 직접 낭독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 수업목적이 아닌 사적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허락 • 56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어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중학교의 검정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별도의 책으로 출판하거나, 유튜브 강의로 사용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혹시 허락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5. 사용설명 목적의 저작물 인용 • 58

은퇴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생활 안내서를 제작중입니다. 이중 네이버 지도의 이용법을 설명하는 꼭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 앱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하고,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캡처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 걸까요?

16. 저작권법상 인용 및 공정이용의 범주 • 60

영화 플랫폼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후 영화를 보면서 몇몇 인상적인 장면을 스크린 샷으로 찍어두었다가 해당 스크린 샷에 맞게 영화 줄거리 등과 함께 제가 느낀 감상평을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영화 줄거리와, 영화 스크린 샷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7. 전통시장에서의 음악저작물의 공연 • 63

저희 시 내에서 전통시장 내 야시장거리를 조성하려 합니다. 이에 맞춰 시장 전체에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을 상시 재생해두려 합니다. 저작권법상 이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8.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65

저희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아인 복지기관입니다. 한국수어 영상 제작을 위해 특정 영화 시나리오와 영화대사 일부를 한국수어로 변환 및 영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의 수어와 영상의 저작권자는 각각 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영상 내에 해당 시나리오를 자막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19.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 67

영상으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VLOG)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일상을 찍는 영상이라 우연히 TV 소리나 영상이 같이 찍히거나, 길거리를 지나 는 장면을 찍다가 매장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작게 녹음되기도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20.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범위 • 69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액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사진)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만 소장하기 위한 것이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죠?

21. 어문저작물의 이용방법 • 71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여 주는 '북튜버'로 활동하려 합니다. 도서를 읽어주고 후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읽어주는 형태임에도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2. 어문저작물이 방송된 경우 이용가능 여부 • 73

가수 팬카페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음악방송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사연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채택되어 소개된 사연을 녹음하여 팬카페와 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노래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할 것 같아 올리지 않고 제가 보낸 사연 부분만 올리려고 합니다.

23. 인터넷 뉴스 기사의 이용과 출처표시 등 • 76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우리 회사 누리집에 게시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 없이 이용해도 될까요?

24.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공저작물 • 78

저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 동상을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프로그램 내 삽입하고자 하는데, 혹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안인지요? 아니라면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나요?

25.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의 이해 • 79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바로” 캐릭터를 공모전 제출용 PPT 제작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이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의 캐릭터나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6. 외주계약에 의한 영상저작물 제작시 유의사항 • 81

저희 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강사는 외부에서 섭외하고 영상제작도 외주전문업체를 통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할 저작권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7. SW개발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조건 등 • 84

저희는 정부기관이며 외주업체를 통해 SW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SW는 공공저작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8. 공모전 출품작(또는 입상작)의 저작권 귀속 · 86

최근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작품을 출품한 후 입상하였는데 주최 측에서 사전에 안 내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므로 더 이상 제가 그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 작품이더라도 공모전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폰트의 이용 · 89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회사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폰트 개발사(법적대리 범무법인)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폰트의 패키지 상품을 모두 구매해야 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데 대응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0. 오픈소스 코드의 허위 저작권 등록 · 90

아마존에서 제공 중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관련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최근 해당 소스와 관련해 검색을 하다가, AWS 예제소스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AWS 예제소스에 대해 어떠한 추가나 변경 내용은 없이 그대로인데, 소스에 명시된 저작권 주석은 모두 삭제하고 제목을 바꾸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픈소스는 물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러한 저작권 등록도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1. 불법 복제된 게임의 구동을 위한 칩을 판매할 때의 저작권 침해 여부 · 92

불법복제 게임을 담을 수 있도록 R4칩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4칩 안에 게임을 넣어서 판매하면 불법이고 안에 게임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32.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과 기업의 책임 · 94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입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SW인 MS 사의 기업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각 직원이 개인용 SW를 직접 구매 및 설치하여 이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유한 노트북에 개인용 정품 오피스가 이미 있어 처음에는 개인용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그대로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엔 은근히 눈총을 주었고, 다른 직원들은 기존의 PC에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은 불법SW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3.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 95

음악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앱 운영자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가 있을 때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34.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방법 · 96

어느 블로그가 국내 TV에서도 방영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매주 불법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로그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침해 당사자, 즉 저작권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기업과 같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의 범주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고, 제 3자는 신고할 수 없어서 뻔히 불법복제물이 있는데도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제3장 저작권 보호 심의 사례

1.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로 전환된 블로그 애니메이션 게시물 · 101
2. 게시자가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외국 만화 게시물 · 103
3. 영화관에서 ‘도촬’한 영상 불법복제물 · 105
4.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물 · 107
5. 불법복제물을 보내줄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게시물 · 109

제4장 부록

- 보호원이 궁금하다 10문 10답 · 114
- 이런 경우는 여기에 문의해 주세요 · 119

제1장

저작권 바로 알기



◆◆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기술, 아이디어 등의 산업재산의 영역을 보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 신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설계, 캐릭터 산업 등

저작권이란?

◆◆ 저작권

•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호, 제10조(저작권)

(1)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다.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한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 전시할 수 있으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단,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등은 제외함)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최초판매의 원칙) *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되었을 경우에도 상업용 음반 및 프로그램의 대여권은 여전히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프로그램은 예외)

저작권법

- 제1조(정의), 제5조(2차적저작물)
- 제2장 제4절 저작재산권
 -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제16조 내지 제22조)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내지 제35조의2)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에 인접하는 권리 또한 보호한다.
-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이에 속한다.

저작권법

- 제1조(정의), 제5조(2차적저작물)
- 제3장 저작인접권(제64조 내지 제90조)
 - 제2절 실연자의 권리(제66조 내지 제77조)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제78조 내지 제83조의2)
 -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제84조 내지 제85조의2)

(1) **실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연을 하는 자(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	재산권	보상
성명표시권	복제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	대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	공연권	-
-	방송권	-
-	전송권	-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음반: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재산권	보상
복제권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배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대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전송권	-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 및 녹화물은 제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권리의 발생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 저작권 등록 시에는 그 권리에 대한 법적인 추정력과 대항력 등이 부여된다.(저작권 등록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 제10조(저작권) 제2항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저작물이란?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인 “창작물”을 보호한다.
-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창작성”이란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물”

◆◆◆ 저작물의 예시(저작권법 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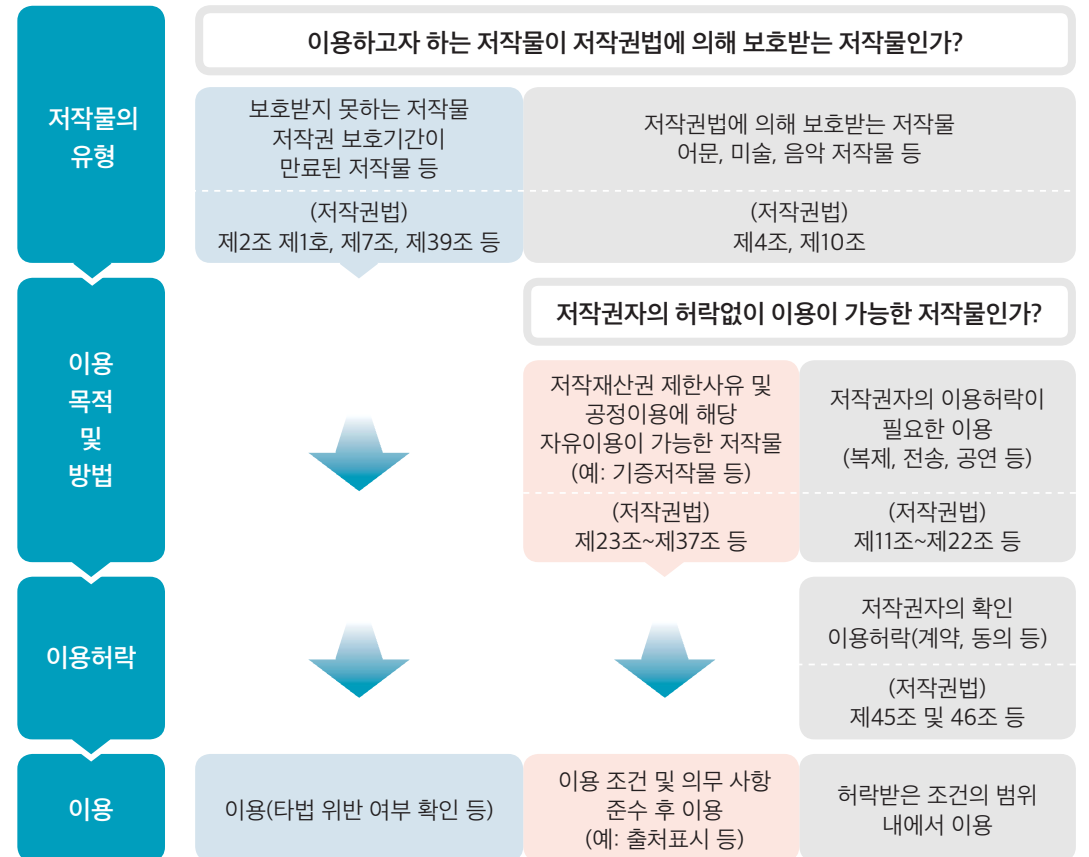
◆◆◆ 이용원칙

-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이용절차



◆◆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1)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 사단법인 코드(Commons.Openness.Diversity.Engagement. CC Korea): <http://cckorea.org/>
- Creative Commons 공식홈페이지: <https://creativecommons.org/>
- 라이선스 종류: 4개의 이용허락조건(①저작자와 출처 표시, ②비영리 목적 사용, ③변경금지, ④동일조건 변경 허락)을 조합한 총 6종류의 CC라이선스가 존재한다.

라이선스	이용 조건
 <p>저작자 표시 (CC BY)</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이용 조건
 <p>저작자표시-비영리 (CCBY-NC)</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p>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BY-ND)</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p>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허락 (CCBY-SA)</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p>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 허락 (BY-NC-SA)</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p>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p>	<p>가능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p>제한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사단법인 코드 누리집(<http://ccl.cckorea.org/about/>), 표로 재구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공공누리 공식홈페이지: <http://www.kogl.or.kr/index.do>
- 라이선스 종류: 4개의 이용허락조건(①저작자와 출처 표시, ②비영리 목적 사용, ③변경금지, ④동일조건 변경 허락)을 조합한 총 4개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유형별 표시방법	이용 조건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1유형: 출처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한국문화정보원 운영) (<http://www.kogl.or.kr/info/introduce.do>), 표로 재구성

*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장
열린상담실 주요
저작권 상담 사례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1 keyword #유튜브 #저작물성 #저작권만료 #저작물의인용

저는 역사와 관련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역사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관련도서, 논문, 민간설화 등을 필수적으로 참조하고 삽입해야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focus 역사적 사실의 저작물성 판단 및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 즉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물,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 표현에 이르지 않은 아이디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즉 역사적 사실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저작물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고, 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기간 및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임진왜란)	출처	이용 방법
음력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역사적 사실	저작물성이 없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賊船蔽海而來, 釜山僉使鄭撥, 方獵於絕影島, 謂爲朝倭, 不設備, 未及還鎮, 而 賊已登城. 撥死於亂兵中	조선왕조실록 원문	1616년경 창작된 저작물이나 보호기간이 오래 전 만료하여 자유로운 이용 가능
적선(賊船)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은 마침 절영도(絶影島)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왜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鎭)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196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번역, 보완하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다만, 학술,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출처표시 필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역사소설 (칼의 노래, 김훈)	임진왜란을 소재로 저작한 소설(어문저작물)이며 저작자가 생존하여 있으므로 인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이외 반드시 이용허락 필요

나. 기록유산, 민간설화와 같은 기록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이 작성된 논문, 역사서, 해설서 등은 별개의 저작물로서 창작된 때부터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인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또는 저작권이 만료된 기록유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별도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범주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시거나, 만약 상당한 분량을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해야 한다면 각 저작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기록유산의 원문 및 해석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의 경우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원문이 아닌 해석 및 별도 제작된 자료의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및 이용 방법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저작권정책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누리집 (<http://db.history.go.kr/>)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국사편찬위원회 명칭 및 홈페이지 URL, 저작자 성명, 발행연도 등)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 우리위원회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개별 웹사이트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 웹사이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우리위원회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국사편찬위원회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 중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권 일부를 갖고 있는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내 콘텐츠 저작권정책(<http://www.history.go.kr/>)

관련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4조의2,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6조(저작물의 보호기간)



keyword #음식의_저작권 #디자인 #옥춘사탕

음식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흔하게 판매되는 사탕디자인(옥춘사탕)을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focus 전형적인 디자인의 저작물성

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외부적 표현, ③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권리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음식을 만드는 방법인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레시피를 포함하여 창작성이 있는 표현으로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레시피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음식의 사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책으로 제작하였다면, 해당 레시피 책은 저작물이 됩니다.

나.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탕을 만드는 법 자체가 아니라 사탕의 특유한 모양(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옥춘사탕 또는 옥춘당이라고 하는 것은 쌀가루로 만든 한국 전통 사탕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크고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알려져 있으며, 둥글납작한 형태에 색상과 색상배열만 달리하여 오래전부터 누구나 만들어 온 모양으로 보입니다.

-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은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작성과 관련한 판례는 아래 소개드립니다.

- 또한, 현재 ‘옥춘’으로는 디자인 등록 결과를 찾을 수 없으며,
- 특정 기업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옥춘사탕 모양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여도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타인이 옥춘사탕을 소재로 그린 그림(미술저작물)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상품화되어있는 정형화된 특정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다면 디자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일반적인 리본 모양의 헤어핀이나 컵케이크 모양의 초 등은 모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양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특별한 기법이나 디자인 등의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옥춘사탕(출처: 위키백과)

판례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판례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965 판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甲 주식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서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판매방식의 특성상 甲 회사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甲 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소프트리, 밀크카우 홈페이지

관련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Q3 keyword #레시피 #미술저작물 #표절 #특허

식품기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업 제품을 사람들이 맛있고 재미있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리 영상과 이미지 사진을 촬영해 SNS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늘 먹는 친숙한 음식을 더 예쁘고 맛있게 만든다는 컨셉이라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에 공개하고 있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참고하자는 기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표절로 저작권 침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팀 내부에서는 “레시피는 저작권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작권보호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focus 레시피와 사진, 영상의 표절

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자연물 등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창작성이 없는 것, 표현형식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나.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간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하는 ‘의거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여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풍(作風) 또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①레시피북이나 레시피 영상 등 저작물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②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 특정한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는 보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SNS에 업로드된 사진과 영상을 유사하게 제작할 경우, 오히려 레시피가 아닌 기존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서 레시피의 이용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사진과 영상은 재료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한 맛의 음식물을 구성하는 레시피라기보다는, 재료를 미술적으로 구성하여 작품을 만들고 이를 촬영한 것에 가깝습니다. 음식의 미술적 구성 자체와 영상, 사진에 대하여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동일하게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하여 복제,전송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Tip

2020. 10. 20. 특허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16년~’19년)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는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출원되고, 그중 2~400여건이 등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특허 등록 사례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라이스 버거의 제조방법,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방법 등을 들었습니다. 일정한 창작성을 갖추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특허 결정된 경우에만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 후 20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을 통해 안 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4 keyword #시나리오 #시놉시스 #저작권등록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투고, 공모전 출품 등의 단계에서 완성 시나리오가 아닌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미완성 작품이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제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도용하였을 때 제가 저작자임을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focus 시놉시스,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법

- 가.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물의 저작권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표현되었다면 반드시 완성작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저작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등록 등의 일정한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나, 저작권을 등록한다면 저작권 보호에 보다 용이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함으로써 해당 등록사항을 추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참조).
 - 즉 공모전에 제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표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 부분은 추정의 효과가 없습니다.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합니다.
- 나.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는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나타나지만, 저작권법적으로는 각각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됩니다. 즉 시놉시스 상태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완성 시나리오'가 아닌 '시놉시스' 자체로만 보호를 받습니다.
 - 실제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저작물을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면,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완성된 시나리오가 별개의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 등록은 등록하신 저작물의 창작자, 창작연월일 등을 추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예술적 참신성이나 작품 간의 유사성 등이 쟁점이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는 효과까지는 없다는 점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유사한 작품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앞서 안내드린 대로 창작연

월일과 공표연월일을 비교하여 선후발 작품 및 의거관계의 판단 자료로 삼거나, 침해행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Tip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등록, 프로그램의 임치, 저작권분쟁에 대한 조정과 알선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락처 등은 부록을 참조해 주세요.

Tip 미국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WGA)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나리오작가들의 권리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WGA는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조합이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11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판결

피고는, 원고의 바람의 나라는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피고의 태왕사신기는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시놉시스로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태왕사신기는 a4 용지 35매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시놉시스가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피고의 저작물은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바람의 나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5 keyword #공표권 #성명표시권 #업무상저작물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여 제작 및 공개를 앞두고 있던 연구 자료의 담당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발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기관에선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자료였으므로 그 피해를 심각하게 보아 법적대응을 고려중인데, 저작권법상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focus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저작권자

- 가. 기관 차원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 자료가 기관의 업무상저작물임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 하였습니다.
- 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은 외부에 공표되는 날짜를 저작물의 발생일자로 추정하게 되는데,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현 시점에서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구 자료를 외부로 공표할 의도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으며, 기관과 담당직원 간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있어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저작물은 기관의 업무상저작물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이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기관이 되므로 기관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상의 공표권 또한 적용될 것이므로, 담당직원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개한 행위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표를 전제로 제작중인 연구 자료의 완성도 및 공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서 등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해당 직원의 무단 활용상에서 기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상 성명표시권의 침해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이외 영업비밀보호의 의무¹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연구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 또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1986년의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하였는데 이후 2006년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공표 상태에 있는 업무상저작물이라도 이미 법인의 물질·인적 투자에 의해 제작되어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미 공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² 저작자를 회사 등 법인으로 판단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면 비록 종업원의 이름이 명시된 기명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약 등이 없는 한은 법인을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³

관련 법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²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2017), 223면 참조
³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2007) 21~22면 참조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6 keyword #2차적저작물 #팬아트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는 아마추어 일러스트작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팬으로서 경기와 특집방송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SNS에 올렸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교내행사 안내와 응원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하며 제 그림을 무단으로 삽입하였습니다. 학교 측에 연락하니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임의로 진행된 일이라고 하며, 비상업적인 목적인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제 팬아트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 학교 측의 말처럼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3. 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 책임은 학교와 제작업체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A focus '팬아트'와 저작권 문제

1. 제 팬아트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 '팬아트'는 일러스트에 무엇이, 또는 누가 그려졌느냐에 따른 분류로, 이 역시 창작물로서의 성격은 일반적인 창작 일러스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진 특집방송 장면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일러스트를 그렸다면, 이는 원저작물인 방송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이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⁴ 팬아트의 저작권은 팬아트를 그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러스트는 원저작물인 방송물과 독립한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한편 방송을 보고 그린 것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⁵, 개인의 SNS에 단순히 응원목적으로 팬아트를 그려 업로드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선수의 얼굴을 본따 팬아트를 그린 경우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응원목적의 팬아트라면 초상

4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권침해가 문제될 확률 역시 낮습니다.

2. 학교 측의 말처럼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나.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는 학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SNS를 검색하여 해당 팬아트를 찾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업체 모두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이 해당 팬아트를 내부 안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영리라 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별적인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이 없는 공유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등으로 미리 이용허락의사를 불특정다수에게 표시해 놓은 저작물의 경우입니다. CCL을 표시하는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표시해 놓습니다. 이러한 사전 이용허락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용자인 학교 및 제작업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아트의 작가가 명시적으로 사전이용허락을 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대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했어야 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은 비록 비상업적이라 하여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3. 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 책임은 학교와 제작업체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다. 물론 현수막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고, 인쇄될 그림을 직접 고르지 않은 학교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조치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한 주체는 결국 학교이므로, 업체와 관련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저작권자로서는 우선 학교에 대해 현수막의 게시중단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학교 측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형사책임은 물론 최소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또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혹은 우선 학교에서 작가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제작업체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Tip

#2차적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 각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소설의 영화화, 웹툰의 게임화 등 원저작물에서 새로이 수정·증감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패러디’나 ‘오마주’도 원저작물에 근거하여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거나, 공정이용등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팬아트

-> 웹툰,영화 등의 창작물, 운동선수,연예인 등의 유명인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창작한 그림입니다. 그 자체로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팬아트의 대상이 저작물일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⁶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입니다. 나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약속된 표시 방식입니다. 물론 CCL 표기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 저작물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로도 사전 이용허락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관련한 내용은 20면 참조



keyword #보호기간 #공유저작물 #외국저작물 #보호국주의 #2차적저작물

공모전 출품을 위해 ‘피터 팬’을 이용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 ‘피터 팬’은 작가가 1937년에 사망했으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focus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 외국저작물의 보호

가. ‘피터 팬(Peter Pan)’은 영국(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인 제임스 매슈 배리(James Matthew Barrie, 1860~1937)가 1904년 발표한 희곡 및 이를 개작하여 1911년 발표한 소설을 통틀어 이릅니다.

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그 저작권을 보호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다만 70년의 보호기간은 2013년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개정에 의하여 30년, 50년, 70년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점점 늘려오면서 이전의 저작물들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에 의하면 1937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30년 후인 1968년에 소멸했습니다.⁷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됩니다.⁸ 공유저작물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나 ‘피터 팬’을 모티브로 한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 한편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는데, 베른협약에 의하면 가입국 민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각국의 자국민이 가지는 권리 및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가입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은 최소한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터 팬’은 저작자가 1937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입니다.

다. ‘피터 팬’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일 텐데요, 소설 원작을 각색한 애니메이션과 같은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따라서 디즈니의 ‘피터 팬’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저작물은 여전히 디즈니가 저

7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구 저작권법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8 저작자가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 저작물,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 일부 조건하에서 일반 사용자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용할 경우의 저작물 등을 통틀어 공유 저작물이라 합니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즈니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피터 팬’을 소재로 한 후속 소설, 영화, 국내에 출판된 ‘피터 팬’ 번역서와 새로 제작된 일러스트 등의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보호기간을 파악하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 또한 이용 안내에서 이용하려는 ‘피터 팬’이 원작소설에 기반을 둔 것인지, 영화 등 다른 작품의 것인지 정확히 찾아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⁹



Tip

‘피터 팬’과 관련하여 영국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슈 배리는 1929년 ‘피터 팬’의 저작권을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에 기증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으므로 피터 팬의 보호기간은 1987년 만료되었는데, 영국은 이듬해인 1988년 영국 내에서 피터 팬의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위 아동병원이 영원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영국 저작권법 제301조(소아병원을 위한 규정)

부칙 6의 규정은 제임스 매슈 배리 경의 희극 "피터 팬"에 대한 저작권이 198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가의 소아병원을 위한 수탁자에게 그 저작물의 공연, 상업발행, 공중에 대한 전달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진다.¹⁰

다만 이 경우에도 ‘피터 팬’의 저작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료에 대한 권리만을 병원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피터 팬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6년 EU 저작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만료되었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부활하였습니다. 피터 팬 또한 20년이 연장된 2007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은 이 저작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6년에 피터 팬의 속편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EU보다 긴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2017년까지 저작권이 있고, 미국에서는 피터 팬 소설은 공유저작물이지만 1928년에 미국에 발간된 희곡은 2023년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이 저작자의 국적국이 아닌 보호국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호국주의라고 합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9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 저작권 안내 : <https://www.gosh.org/about-us/peter-pan/copyright/>

10 <영국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keyword #사진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영리목적의 출판물에 사진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사진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957년 제정 당시에는 사진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창작한 후로부터 10년간만 보호했다가, 1987년부터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행 저작자 사망 후 70년).

1. 그렇다면 1977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작가가 사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각 기관에 1950년 이전에 생산된 많은 사진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료로 구입한 것도 있고, 무료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각 기관에서 문서로 사진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출처 및 저작권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반드시 표기하고, 출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간된 출판물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이라면 각 기관은 어째서 저작권과 출처 표시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focus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가.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던 개정은 1986년 개정과 2011년 개정입니다.

- 최초로 저작자 사후 30년이었던 저작권보호기간은 1986년 개정(1987년 시행)에서 사후 50년, 2011년 개정(2013년 시행)에서 사후 70년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차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문, 영상, 사진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이 동일한 기준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사진의 경우 문의주신 대로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행한 해(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35조).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는 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및 보호기간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종속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보호받도록 하였습니다(제36조).

- 즉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뀐 1986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976. 12. 31. 까지 발행된 사진 저작물로서 다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삽입된 사진이 아닌 사진은 저작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또는 원판제작) 후 10년으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였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확대되기 전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불법화되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이전에 소멸된 저작재산권은 확대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과규정 때

문입니다.

- 즉 1976년 이전에 발행된 사진은 저작자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재산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즉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에 삽입된 사진의 경우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별개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라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재산권과 달리 여전히 존속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는 물론,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 즉 출처 표시의 경우 저작권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별도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보호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각 기관은 자체 저작권관리지침에 따라 저작물을 관리합니다. ①제정 저작권법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구분 없이 저작자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으므로, 다량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제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가 지침에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②각 사진의 공표(발행)연도 등 저작권과 관련한 사실이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③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의 경우 사료의 이용현황 관리 차원에서 이용범위를 미리 알리고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저작자, 피사체 또는 가까운 유족이 생존하여 있는 등 인격적 보호가치가 있는 사진의 경우 저작인격권, 초상권, 역사적 가치 등을 근거로 이용에 승인을 요구하는 방침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저작권법적으로는 1976. 12. 31.까지 발행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재산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부칙(2011. 12. 2. 법률 제11110호) 제3조(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keyword #소유권 #퍼블릭_도메인 #이중섭

최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후 기증 형태로 많은 미술품이 공개되고 있는데, 각 미술품의 소유권으로 분쟁이 있는 한편 저작권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화가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3.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focus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1. 우선,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 소유권은 물건¹¹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민법상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 즉 무체물인 ‘표현정보’¹²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쓴 ‘소설작품’이 무체물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면, 작품이 담기는 ‘원고’나 서점에서 팔리는 ‘소설책’은 유체물인 물건으로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인격적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되지만, 소유권은 오로지 물건에 대한 권리일 뿐 인격적인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화가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나. 미술품이 제작되면 유체물 자체가 가지는 물건적 가치와, 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권적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든 소설과 달리 미술품은 원본이 복제물과 구분되는 유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그 원본 유체물의 거래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원본의 가치가 높은 특징 때문에 자칫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본의 소유권 취득과 무체물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취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작품에 화가의 이름을 올바르게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¹¹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¹²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는 소유권을 거래할 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작품 원본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작품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¹³ 미술품을 구입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라. 한편,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¹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경우라면 작품의 거래에서 오로지 소유권의 이전만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이중섭 화가의 ‘황소’, ‘흰소’라는 작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¹⁵이 경우 그림 원본의 소유권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게 되고, 저작재산권은 이중섭 화가가 1956년에 사망하였으므로¹⁶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닌 누구나 미술관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의 행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14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5 베일 벗은 이견회컬렉션...이중섭·이상범 희귀작 '눈길'(종합) 연합뉴스, 2021.05.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048751005?input=1195m> (2021.11.10. 최종검색)

16 저작권법 개정(2011.6.30. 법률 제10807호, 2013.07.01. 시행)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종전 50년의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70년의 새로운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962. 12. 31.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50년이 지난 2013. 1. 1.부터는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즉 1956년 사망한 이중섭 화가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만료되었습니다.

3.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 음악의 경우 CD 등의 유형물로 제작 및 판매되었을 때 소유권은 해당 유형물에 적용되는 것이며, 담겨 있는 음악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음악이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그 파일 자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스트리밍을 위주로 유통되는 음악저작물의 특성 및 복제가 쉬운 파일의 특성상 소유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불법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바. 캐릭터의 경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물(인형, 장난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유형물은 소유권으로, 캐릭터 자체는 무형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자가 캐릭터 인형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홍보의 목적으로 진열해 둔 경우, 소유권이 있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장소에 놓아둔 것뿐이지만, 그 이용이 단순한 진열이 아닌 ‘캐릭터 카페’의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캐릭터의 가치를 무단으로 매장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Tip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이 손실되지 않는 이상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특징을 지닙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법으로 정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등 어떠한 이유로든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이르는 말로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되는 저작물의 경우 타인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중섭

-> 20세기 한국 근대서양화의 대표 화가로서 「황소」, 「흰소」 등의 소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시대의 아픔을 품은 한민족의 표상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나는 가족」과 같이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을 그려내기도 하였습니다.

Q10 keyword #소유권 #배포권 #최초판매의_원칙 #미술저작물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 읽고 중고로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팔아도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책을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focus 저작물의 거래와 저작권

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대량으로 인쇄되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은 민법상의 물건으로 소유권의 객체인 동시에, 저작권법적으로는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입니다. 소설책 한 권의 소유자는 그 책을 구입한 사람이지만, 책의 내용이 되는 소설 작품은 구입한 사람이 아닌 작가의 것입니다.

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1조). 책을 구입한 사람은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다른 권리인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이용'은 단순히 저작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등 형태의 이용을 말합니다.

다. 다만 저작권법은 해당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 즉 정당하게 거래된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후단). 책을 중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 또한 같은 경우로 허용됩니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최초판매' 혹은 '권리소진'이라는 말은 정당한 판매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최초로 판매됨으로써 해당 물건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임과 동시에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기도 한데, 저작권을 근거로 소유권의 내용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이때 주의할 것은, 제한되는 저작권은 '합법적으로 판매된 그 물건에 대한 배포권' 뿐이고, 다른 저작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본 또는 복제물을 구입한 소유자가 임의로 새로운 복제물(스캔본)을 만드는 것은 복제권의 침해,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됩니다.

라. 진품, 즉 원본이 중요한 미술품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술품 또한 물건이므로 원본을 한 번 판매한 저작자는 해당 원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유권과 배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중 다른 권리들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미술품에 특유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미술품을 감상하고 전시하기 위해 구입한 소유자가 정작 전시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작품은 그 가치와 용도대로 활용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본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 다만 복제물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 가로·공원·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소유자가 허락 없이 미술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혹은 판매를 위하여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즉 도록이나 카탈로그를 만드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Tip

실물 복제물 중에서도 상업용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1조). 대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무단복제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저작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Q11 keyword #소유권 #저작권재판보호기간 #법정허락제도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만화책과 관련하여 언론사 측에서 해당 작가의 소개를 위하여 만화책의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자는 1990년대에 이미 사망하였고, 유산이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족의 연락처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허락을 문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focus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법정허락제도

가. 해당 만화책의 소유권은 박물관에 있으나, 만화작품의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재판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므로, 현재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유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화책을 복제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주체는 박물관이 아닌 만화가의 유족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재판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유족이 아닌 제 3자가 저작권재판권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그러나 언론사에서 만화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보도의 목적에 의한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정도에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만화책의 일부, 특히 표지 부분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화책의 주요 내용 자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관련하여 현재 저작권재판권자로 추정되는 작가의 유족 측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항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재판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¹⁷을 기울여야 하고, 그럼에도 저작권재판권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권재판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를 통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조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문의, 정보시스템 공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 등의 노력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17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에 따른 법정허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
- 대상 : 저작권재판권자 불명인 저작물
- 방법 :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② 해당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반드시 조회
③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권재판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라. 한편, 위의 행위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언론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박물관 측에서는 저작권재판권자를 원활히 찾기 위해 해당 만화책의 표지 및 작가 이름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ip

위와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재판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제도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신탁단체에 소속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 및 법정허락제도를 위한 공고 게시, 보상금 공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https://www.findcopyright.or.kr/>)

관련 법

저작권법 제50조(저작권재판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Q12 keyword #수업목적이용 #음악저작물 #코로나19 #비대면

초등학교 음악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려주고, 실시간 비대면 원격 수업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고 표현하여 보는 학습활동을 기획중입니다. 음악 파일을 e학습터에 올려 미리 듣고 오도록 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A focus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에서의 수업 준비에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단체가 함께 협의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을 허용한 것인데, 다만 ①수업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접근·복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이 끝난 후에는 활용교재를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즉 e학습터와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게시판과 같은 곳에는 수업용 저작물이라 하여도 올리면 안 됩니다.

- 수업목적 외로 저작물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실히 교육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한편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이 유튜브를 통해 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가입된 회원의 음악이라면, 파일을 직접 올리시는 대신 게시된 유튜브의 링크를 제공하여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측에서 음저협에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유튜브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이 음저협 회원들의 음악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유튜브에 등록된 음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유튜브에 음악을 게시(등록)하여 이용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아닌 다른 영상이나 음악 서비스의 경우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인터넷 상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에 유튜브에 이어 '팟빵' 서비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협약을 체결하여 페이스북 프로필, 인스타그램 스티커 기능을 통해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튜브라 하여도 음악이 아닌 도서, 영화와 같은 저작물은 허락 없이 업로드 하여 이용하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13 keyword #시 #교육관련목적이용 #배포 #낭독공연

초등학교 학부모회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트잇에 동시를 인쇄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동시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현장 캠페인에서 직접 낭독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focus 수업목적 이외의 교내 저작물 이용

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업목적’이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업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보충수업,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학교장이 지휘, 감독하지 않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 또한 그 이용주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되며, 학부모와 일반인의 경우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편 수업과 관계없는 단순 참고자료로서의 사용이나 학급통신, 학교소식 등에 이용하는 것 또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위 안내에 비추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하면, 학부모회의 캠페인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할 문구류에 동시 전체를 인쇄하는 것은 수업목적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한편, 타인 저작물의 이용이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에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인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 또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주신 이용은 ①②교육 캠페인에서 배부하는 문구에 인쇄할 목적이고, ③④저작물의 전체

를 단순히 복제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결론적으로 문의주신 형태의 이용은 수업목적 이용, 공정이용 및 인용에 해당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대신 캠페인 프로그램 현장에서 낭독하는 형태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으로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캠페인 구성에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Q14 keyword #교과서 #참고서 #동영상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어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중학교의 검정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별도의 책으로 출판하거나, 유튜브 강의로 사용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혹시 허락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A focus 수업목적이 아닌 사적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허락

가.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 하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때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 영어 교과서는 어문저작물이며, 교과서에 수록된 원저작물 또한 교과서와 별도의 어문저작물입니다. 양질의 저작물을 교육에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제25조에서 교과서 제작 및 이를 활용한 교육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도서를 본래 목적(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때 교과서 제작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항).

- 다만 위 조항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 즉 교과서 출판사에 한합니다. 출판사가 교과서와 그 해설서, 수업자료 등을 제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저작물의 성질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부)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때 저작물은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 조항 또한 제3항에서 규정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학원, 사설 강의 등의 경우 그 목적이 교육이라 해도 수업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라. 결국 문의주신 대로 교과서 수록 저작물을 별도의 책 또는 강의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원칙대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용허락의 절차 및 방법, 비용 등에는 달리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각 출판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의 고유 내용에 대하여는 교과서 출판사 측의, 교과서가 인용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 측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Q15 keyword #사용설명서 #인용

은퇴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생활 안내서를 제작중입니다. 이중 네이버 지도의 이용법을 설명하는 쪽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 앱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하고,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캡처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 걸까요?

A focus 사용설명 목적의 저작물 인용

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 경우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 5835 판결).

나. 네이버 지도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이버 지도 앱의 구동 및 사용 화면을 캡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교육 등을 위한 인용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네이버 지도 앱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도 앱의 아이콘과 구성화면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나타난 지도화면도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지도 앱을 캡처하여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자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한다기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미술저작물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용의 경우 영리성에 따라 정당한 인용인지, 저작권 침해인지가 결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리성이 없다면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정해진 방법이 없으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면 족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네이버 지도 앱'의 사용법이라고 명시하신다면, '네이버 지도 화면 캡처' 정도의 표시로도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표시되는 주소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마트 생활 안내서를 발행한 해당 기관의 주소 등 공개적인 이용이 가능한 주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이버 지도는 2020년부터 지도 API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도 데이터 자체를 대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신청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7조(출처의 명시)

Q16 keyword #영화리뷰 #공정이용 #인용 #비평

영화 플랫폼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후 영화를 보면서 몇몇 인상적인 장면을 스크린 샷으로 찍어두었다가 해당 스크린 샷에 맞게 영화 줄거리 등과 함께 제가 느낀 감상평을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영화 줄거리와, 영화 스크린 샷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focus 저작권법상 인용 및 공정이용의 범주

가. 권리가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자(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영화를 캡처한 이미지나, 영화의 예고편, 자막, 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원저작물인 영화 이용 시 유료 구매하였는지 무료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제2장 제4절 제2관(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에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게시하고자 하는 감상평이 줄거리 요약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해석을 겸비하여 '비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하신 스크린 샷이 해당 감상평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적절히 이용되었다면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용한 스크린 샷의 수가 너무 많고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사실상 영화 전체의 줄거리와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 따라서 원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및 이용하여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7조(출처의 명시)

Q17 keyword #음악저작물 #공연 #비영리공연

저희 시 내에서 전통시장 내 야시장거리를 조성하려 합니다. 이에 맞춰 시장 전체에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을 상시 재생해두려 합니다. 저작권법상 이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A focus 전통시장에서의 음악저작물의 공연

가. 저작권법상 공연은 반드시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 연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녹음된 음악이나 녹화된 영상물을 재생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특정장소에서 재생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공연권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허락과 공연권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등은 다시 예외로 하여 이용허락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시행령 제11조를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는 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행령 11조 6호에서 안내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따른 전통시장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시행령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음악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서 음악을 틀어두는 행위는 별도의 허락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음악은 음원유통사이트의 결제 또는 CD 구매 등 합법적으로 취득한 음원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가 전통시장으로 규정된 장소 이내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 11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 공연권의 처리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음원의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른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장소는 아래의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를 참조할 수 있으며, 공연권료의 기준 및 처리는 국내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 , 02-2660-2400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관련 법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Q18 keyword #청각장애인 #한국수어 #저작권재산권제한

저희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아인 복지기관입니다. 한국수어 영상 제작을 위해 특정 영화 시나리오와 영화대사 일부를 한국수어로 변환 및 영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의 수어와 영상의 저작권자는 각각 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영상 내에 해당 시나리오를 자막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focus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가. 귀 기관에서 활용하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되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나리오를 작성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저작권법 제33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이나 음향 등을 자막 등의 방식으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수어로 변환하여 이용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영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나 음향까지도 모두 변환 및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어로 변환된 시나리오의 형태는 2차적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복지기관측이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의 저작권 또한 기관측이 권리를 가집니다.

라. 또한 자막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중 자막 삽입은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Tip

저작권법은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 등을 한국 수어(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제11903호, 2013. 7. 16, 저작권법 일부개정)
위 내용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의 조건 및 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은 아래의 법령과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관련 법

저작권법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keyword #VLOG #부수적복제

영상으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VLOG)¹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일상을 찍는 영상이라 우연히 TV 소리나 영상이 같이 찍히거나, 길거리를 지나는 장면을 찍다가 매장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작게 녹음되기도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focus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 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나. 다만, 2019년 11월 26일 개정으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부수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저작권법 개정 이전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된 지금은 브이로그 제작 시 주된 촬영 대상은 사람이나 길거리, 집안 풍경 등인데 부수적으로 잠깐 보이거나 들리는 TV 소리, 음악 소리 등은 부수적으로 복제된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영상 등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공중송신), 공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다. 그러나 동조에서는 또한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부수적 복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뒀습니다.
 - 부수적으로 녹음, 촬영된 정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거나,
 - 영화와 같이 모든 장면이 철저한 기획 하에 촬영되는 경우, 길거리 장면을 촬영하면서 우연히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부수적 복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8 비디오 로그(video log) 또는 비디오 블로그(video blog)는 비디오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지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순화어: 영상 일기)

라. 따라서 브이로그를 촬영하실 때는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 원래의 촬영 계획과 의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 원저작물에 비하여 이용된 분량이 작아야 할 것입니다.
-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이 촬영 및 녹음된 경우라면 선불리 부수적 복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Tip

부수적 복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은 피고가 TV 광고를 촬영하면서 서울의 모 호텔 라운지 한 쪽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광고 출연자의 뒷부분 배경화면으로 10초간 전체 및 부분이 노출된 것에 대해, 해당 작품은 단순 인테리어가 아닌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 광고를 제작하고 TV 송신한 데 대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역시 부수적 복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대법원(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 사진이 응원문구를 간접적·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진들에 응원문구의 원래 모습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진들이 시장에서 응원문구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이 인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keyword #사진저작물 #사적복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액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사진)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만 소장하기 위한 것이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죠?



focus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①인간의 사상과 또는 감정, ②외부적 표현, ③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됩니다.

- 사진 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고 보았으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상의 사진이 위 사진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 사적복제에 해당하려면 ①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개인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④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⑤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2011년 발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¹⁹ '영리의 목적'이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

19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VI.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중 150~151면 참조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인 회사 등이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TV 방송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하여 녹화해 두는 행위, 구입한 음악CD에 수록된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 넣어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하기 위하여 리핑하는 행위²⁰ 등은 영리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이용의 목적이 이용자 개인의 조사, 연구 등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든 취미, 오락 등 소비적인 목적 또는 단순한 수집, 보존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복제의 주체가 사적인 이용자 본인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행위의 주체가 본인이거나 비서 등과 같이 업무상 본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타인까지는 무방하나,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에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또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사점에 설치된 복사기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외에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상 전문복제업자가 소유,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제공하는 복사기도 포함됩니다.

마.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사진)을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 후 개인 소장 목적으로 직접 액자 등의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영리목적의 사업자에게 복제기기를 통한 액자 제작을 의뢰할 경우, 사적이용으로 보기 힘들고, 저작권자는 이용자와 액자 제작 사업자 모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136조(벌칙)

²⁰ CD나 DVD에 담겨 있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등을 PC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Q21 keyword #복투버 #저작물이용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여 주는 ‘복투버’로 활동하려 합니다. 도서를 읽어주고 후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읽어주는 형태임에도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focus 어문저작물의 이용방법

가. 도서는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서를 읽어주는 복투버 콘텐츠는 저작물을 음성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복제·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은 뒤 이용해야 합니다.

나. 다만,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 관련하여 도서의 리뷰는 저작권법 제28조 중 ‘비평’의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리뷰하기 위한 저작물의 일부이용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해서도 도서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라. 다만, 도서의 이용이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몇 페이지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일괄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물은 꼭 필요한 범위만큼만 이용하여야 하며,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나,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에서 내부 및 외부 계약관계를 관리하고 작가와의 연락을 중개하여 줄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 문의는 출판사를 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Tip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KCOPA TV'에 현재 북튜버로 활동하는 '다솔책방'님, 보호원의 침해예방 및 공정사용 지원단 전세준 변호사(법무법인 제하)와 함께 저작권 도서리뷰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저작권 교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KCOPA TV 채널

관련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keyword #방송 #어문저작물 #라디오사연

가수 팬카페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음악방송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사연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채택되어 소개된 사연을 녹음하여 팬카페와 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노래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할 것 같아 올리지 않고 제가 보낸 사연 부분만 올리고자 합니다.



focus 어문저작물이 방송된 경우 이용가능 여부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한 라디오 방송물은 방송사에게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방송물을 임의로 녹음하여 블로그 또는 팬카페에 올리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라디오 방송 중 음악 부분은 음악저작물로서 음악저작권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과 관련한 권리처리를 마친 상태에서 음악을 이용하고, 전송에 해당하는 다시듣기 서비스에서는 음악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채택된 사연을 블로그와 팬카페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먼저 방송사 홈페이지, 공식 팟캐스트 등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링크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링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방문자들에게 사연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원 저작물의 URL주소를 제공하는 직접링크 설정은 원저작물 자체가 아닌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정하는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송과 별도로, 방송사에 보내신 사연 원문은 어문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자는 작성자인 귀하입니다. 보내신 사연의 원문은 블로그 또는 카페에 제약 없이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출처표시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37조).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이용조건 중의 하나로써 출처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이라면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그 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표시는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의무사항일 수는 있지만 출처표시 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을 출처만 잘 표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Tip

링크는 인터넷상의 특정한 웹화면을 다른 웹화면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판례는 저작물에 대해 직접링크를 하는 것은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판결). 즉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창의 URL주소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링크된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물일 경우입니다. 링크된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물이 아닌 불법복제물인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링크행위 자체가 복제·전송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불법복제물 직접 복제·전송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판결).

관련 법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8조(공중송신권)



keyword #뉴스저작물 #출처표시 #링크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우리 회사 누리집에 게시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 없이 이용해도 될까요?



focus 인터넷 뉴스 기사의 이용과 출처 표시 등²¹

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신문, 인터넷신문의 기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문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²² 기사 내의 사진 또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락받은 이용조건과 범위(기사의 변형 여부 포함)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 타 언론사의 기사를 귀사의 누리집에 전재(全載)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기사를 일부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단순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제23조 내지 제38조).

- 그 중 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조항은 '다른 언론기관'의 경우를 전제한다는 것이므로, 귀사가 언론기관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재금지과 같이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다면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비록 그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 제27조는 '복제·배포 또는 방송'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 외에 동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인용의 목적과 내용, 방법, 분량

21 보호원 C STORY 2019·9+10월호(Vol.18), "친절한 바로C"

22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다. 출처표시는 이러한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37조).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이용조건 중의 하나로써 출처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이라면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그 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표시는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의무사항일 수는 있지만 출처표시 자체가 저작권자의 제한사유 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을 출처만 잘 표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Tip

링크는 인터넷상의 특정한 웹화면을 다른 웹화면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판례는 저작물에 대해 직접링크를 하는 것은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판결). 즉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창의 URL주소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링크된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물일 경우입니다. 링크된 저작물이 정당한 저작물이 아닌 불법복제물인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링크행위 자체가 복제·전송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불법복제물 직접 복제·전송자)의 범주를 용이하게 하므로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판결).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7630 판결

저작권법 제25조의 ①‘보도 등을 위한 인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원고가 해외뉴스를 자신의 뉴스에 사용하는 형태는 당해 해외뉴스를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뉴스 자체가 원고의 보도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인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정당한 범위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외신뉴스를 뉴스시간에 방영하면서 외신뉴스의 화면을 제공하면서 음성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주된 부분은 당해 해외뉴스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법 소정의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keyword #이순신장군동상 #미술저작물 #공공저작물

저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을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프로그램 내 삽입하고자 하는데, 혹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안인지요? 아니라면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나요?



focus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공저작물

가. 광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은 조각품으로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제한되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부수적복제로서 촬영이나 녹화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동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와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동상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위의 저작권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의 전부를 가진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이순신장군 동상은 저작권자가 서울시에 있는 공공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의 예외로 규정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공저작물이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권권은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상을 이용하려는 방법과 범위를 상세히 하여 해당 신탁단체에 이용료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Tip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공공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 이순신 동상과 같이 위 4번의 조건에 해당되어 신탁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Alright)을 통해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 - -> 이순신 동상 검색

관련 법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keyword #바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바로’ 캐릭터를 공모전 제출용 PPT 제작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이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의 캐릭터나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focus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의 이해

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공공저작물²³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제시한 이용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위와 관련하여 이용조건에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를 ‘공공누리’라 부르며, 이용조건에 상세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관의 누리집의 저작권정책 또는 이용하려는 자료의 상세페이지에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시고, 만약 공공누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제시되는 이용 조건 및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누리 유형 및 세부조건 등에 관련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을 참조 바랍니다.²⁴

다.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의 경우 현재 ‘공공누리 제4유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을 지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 캐릭터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각 기관에서 설정한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 한 뒤 이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23 공공저작물은 국가기관 등이 ①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것과, ②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즉 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본 책의 22면(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참조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26 keyword #어문저작물 #편집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표준계약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강사는 외부에서 섭외하고 영상제작도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할 저작권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focus 외주계약에 의한 영상저작물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는데, ① 외부강사의 강의내용은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 예시 중 ‘강연’으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이를 촬영하여 편집한 영상은 ‘편집저작물’²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강사가 창작하여 강연한 내용의 저작권은 외부강사가 가지게 되고, 이를 촬영한 교육 영상은 외주전문업체가 촬영 등을 맡게 됐을 시 업체 측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다만, 강의 영상 제작 자체는 도서관 측의 의사에 따른 지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작물로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나. 도서관측은 강의영상을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가지든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든 두 경우 모두 결국은 외주업체 측에 해당 영상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주업체에 영상제작의 용역을 의뢰하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의 저작권을 일체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강사의 강의내용 또한 ‘강연’으로서 강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외부강사에게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영상 내에 강사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초상권에 대해서도 함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강사 측과 외주업체 측과의 서면 상의 계약으로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계약서 내에는 이용목적과 범위,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이용허락·양도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²⁶

25 저작권법 제2조(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



어문저작물은 크게 문서 저작물과 구술 저작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서 저작물이 말 그대로 시, 소설, 논문 등 글자로써 표현되는 것이라면, 구술 저작물은 말로 표현하는 저작물로서 강연, 강의, 설교 등을 말합니다.²⁷ 다만, 구술 저작물의 경우,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읽어주는 수준이라면 창작성이 없어 별도의 저작물이 되지 않고 그저 ‘실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그대로 읽어준다면 실연에 해당하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내용을 소화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구술로서의 어문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27 오승중,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2016), 104면~105면 참조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Q27

keyword #프로그램저작권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표준계약서

저희는 정부기관이며 외주업체를 통해 SW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SW는 공공저작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W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공저작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2. 만일 SW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가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3. 현재에는 A 업체와의 계약으로 SW를 개발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업체 선정 시 B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SW의 소스코드 등 세부 산출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일 A 업체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focus SW개발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조건 등

1. SW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공저작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가.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제작한 자에게 귀속되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용허락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에 의해서 저작물이 제작되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종류와 제작의도 및 발주사와 사업자 간의 저작물 제작에 따른 기여도 등을 따져 저작권자가 달라집니다.

나. SW 개발과 관련한 용역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사에서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의 서류에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조항을 명시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일반용역 계약예규 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인 SW산출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게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해당 산출물을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 전부를 양수하고,²⁸ 그 이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SW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가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 SW 제작계약에서 발주자는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사업자는 발주 내용에 따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SW를 납품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기능적으로는 물론, 저작권 등 권리에도 하자가 없어야만 문제없는 이용이 가능한 완전한 계약이행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사실을 찾아내기는 현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만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을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상에 삽입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문제발생 시 이를 바탕으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에는 A 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SW를 개발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업체 선정 시 B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SW의 소스코드 등 세부 산출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일 A 업체에서 저작권을 행사하여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 앞서 언급 드렸듯이, 만일 저작권의 일체를 양도받게 된다면, 저작권 전체를 발주사가 가지게 되므로 위의 사항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여전히 두 당사자에게 있다면 SW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산출물의 저작권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부에 산출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 SW의 유지보수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사항에서 개발에 따른 소스코드 등을 SW와 함께 제출할 산출물로 포함시키고, 사전 계약사항에서 유지보수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항을 삽입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때에는 반대로 B업체와의 계약에서 기존 소스코드의 분석 및 활용은 해당 SW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사유가 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중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Tip

#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 등의 자료 일체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공공저작물

->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서 별도의 제한사유가 아닌 경우 공공누리 조건 하에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부기관의 저작권정책 또는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누리집: <https://www.kogl.or.kr/index.do>

#이용허락

->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원활한 저작권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내 자료공간 -> 표준계약서



keyword #공모전 #약관법 #저작권재산권의_양도 #이용허락

최근 일러스트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후 입상하였는데 주최 측에서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므로 더 이상 제가 그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 작품이더라도 공모전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focus 공모전 출품작(또는 입상작)의 저작권 귀속

가. 저작자는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또한 저작권의 (전부)양도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양도를 의미하며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의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재산권 중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한 저작자에게 여전히 귀속됩니다.

나. 그러므로 주최기관에서 제시한 안내문이 있다면 해당 안내문 내 저작권의 양도 및 특약 사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러한 안내문은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에 의하면 중요한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고(약관법 제3조 제4항),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약관법 제6조 내지 14조).
- 다만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 또한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의무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공모전 안내문의 내용과 공모전 진행 당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최기관의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설명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재산권에 한하며, 만약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모전 응모 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 귀속실태와 관련하여, 응모작품(또는 수상작품)에 관한 권리를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²⁹
- 이에 따르면 당선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킨다는 공모전 안내문의 문구 역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위 공모전의 주최기관에서 제시한 안내문 등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판단 전에는 저작자더라도 당선작을 이용한 상품 제작·판매 등의 행위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위 공모전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안내(조항)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으로 상품을 제작·판매한 저작자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 덧붙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일부 기관에서 공모전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모전 가이드라인³⁰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제6조 내지 16조)

²⁹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시정 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s://ftc.go.kr/>) 내 정책/제도 -> 소비자정책 -> 불공정약관심사(2014.08.08. 게시)
³⁰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내 분야별 정책 ->콘텐츠·저작권·미디어

Q29 keyword #폰트 #서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내용증명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회사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폰트 개발사(법적대리 법무법인)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폰트의 패키지 상품을 모두 구매해야 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데 대응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focus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폰트의 이용

- 가. 폰트는 ‘글씨체’ 자체와 그 글씨체를 나타내는 ‘폰트파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판례는 “폰트는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을 위한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여(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 25075) ‘글자체’인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반면, 폰트와 구별되어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인 ‘폰트파일’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프로그램(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이미지에 ‘글씨체(폰트의 모양)’이 이용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나. 다만 폰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용계약(구입, 다운로드 등)을 하였을 때 허락받았던 이용범위 및 이용조건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계약의 위반(라이선스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즉,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이용범위 및 이용조건 내에서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또는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이용범위 및 이용조건을 벗어난다면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각 저작권자(폰트 개발사 등)에서 제시하는 이용 조건을 숙지 후 해당 범위 내에서 폰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무료 폰트든 유료 폰트든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을 시 이는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저작권 침해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합의금 또는 제품의 구매 의무 등은 권리주장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으로, 벌금형이나 손해배상 금액과 같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재산적/인격적 손해액을 제시하며,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손해배상의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1.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폰트의 이용으로 인해 내용증명 등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2.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했는지 그 경위를 확인하고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 후 이에 대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³¹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지 않은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제3자가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경우, 문서정보에 이 사건 서체가 포함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문서가 피고 소관 컴퓨터를 통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소관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서체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서체 파일 자체의 이용이나 결과물인 이미지의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인쇄업체에 문서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급인인 인쇄업자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인쇄업자가 편집한 문서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40조(고소)

3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1800-5455,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Q30 keyword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저작권 #이용허락 #저작권인격권 #허위등록

아마존에서 제공 중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관련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최근 해당 소스와 관련해 검색을 하다가, AWS 예제소스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AWS 예제소스에 대해 어떠한 추가나 변경 내용은 없이 그대로인데, 소스에 명시된 저작권 주석은 모두 삭제하고 제목을 바꾸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물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러한 저작권 등록도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focus 오픈소스 코드의 허위 저작권등록

가.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저작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오픈소스가 소스코드에 포함된 저작자 또는 저작권정보를 삭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포기나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되 단지 사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자유로운 이용허락과 포기까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어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참조). 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여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제55조 제2항 제3호), 반려사유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또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즉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제136조(벌칙), 제137조(벌칙)

Q31 keyword #기술적보호조치 #게임 #R4칩

불법복제 게임을 담을 수 있도록 R4칩³²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4칩 안에 게임을 넣어서 판매하면 불법이고 안에 게임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focus 불법 복제된 게임의 구동을 위한 칩을 판매할 때의 저작권 침해 여부

가. R4칩은 안에 게임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장치’로서, R4칩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법 복제된 게임의 구동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는 바, 이는 게임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기 판례 참조]

- 저작권법은 제104조의2에 근거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상 법정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구제 방법 이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³³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닌텐도주식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복제, 공유, 임대, 개조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실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임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손쉽게 불법복제 게임 저작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를 알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거·폐기 및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호원 신고페이지 COPY112 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³² 닌텐도 DS의 카드를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개조한 게임 백업 디바이스로 스킨, 동영상, MP3, 사진, 게임 등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³³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으로,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등의 사항을 말합니다.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액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액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액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액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8 선고 2008고단2104 판결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및 dstt 카트리지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를 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r4 및 dstt는 각 카트리지의 rom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는 nintendo 로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청구 등), 제136조(벌칙)

Q32 keyword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라이선스 #양벌규정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입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SW인 MS 사의 기업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각 직원이 개인용 SW를 직접 구매 및 설치하여 이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유한 노트북에 개인용 정품 오피스가 이미 있어 처음에는 개인용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그대로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엔 은근히 눈총을 주었고, 다른 직원들은 기존의 PC에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은 불법SW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focu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과 기업의 책임

- 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이하 ‘MS Office’)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구매계약은 물건의 구매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이선스 구매계약,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도 학생용, 일반용, 기업용 등 버전을 나누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라이선스에 따라 허락하는 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계약, 즉 라이선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이용약관의 형태로 제공 됩니다. 라이선스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약관 중에서도 해당 부분을 실물 패키지에 크게 표시하거나,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는 구매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지 등을 생각하시고 이용약관을 잘 살펴서서 알맞은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나. 귀하께서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된 개인용 라이선스 MS Office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 즉 이용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적용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간을 단위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 소유 노트북이라도 회사 안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회사의 감독 하에 업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약관에 의하여 종종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도 하니 개인용 노트북과 개인용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 한편 다른 직원이 불법으로 다운받은 MS Office를 설치한 것은 고의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 또한 불법 복제된 MS Office를 이용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하여 회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므로 두 사람 다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라. 한편, MS Office를 사주지 않아 결국 불법복제물을 쓰도록 방치한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즉 고용주에 대하여도 같은 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한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은 고용주까지 처벌하므로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저작권법을 준수하라고 안내하기는커녕 기업용으로 쓸 수 없는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개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였고, 직원들 간 불법복제물의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므로, 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주고, 불법복제물이나 개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의 불법SW이용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2020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 136면)

주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대상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	이 장(제11장 벌칙)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대상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관련 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Q33 keyword #음악앱 #저작권등록 #무방식주의 #면책요건

음악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앱 운영자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가 있을 때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A focus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앱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 음악의 경우 음악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음악의 작사가, 작곡가, 실연자(가창, 연주), 음반제작사가 각각의 권리를 갖습니다.

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등록이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반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하고(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손해배상의 청구 시 법정손해배상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저작권법 제125의2) 저작권의 증명 및 권리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 저작권등록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³⁴에서 운영하고 있어 등록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만약 상기 앱이 별도의 서버를 두고 모바일에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앱으로 연결해주는 시스

3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 1800-5455, <https://www.cros.or.kr/>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템으로 구동된다면 상기 앱의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별도의 서버 없이 모바일 기기 내에서만 구동이 되는 앱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102조)
- 이용자 업로드 게시판 형태의 앱(온라인서비스) 운영은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앱 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면책됩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 2, 제133조의 2 및 제133조의 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 다만, 서비스 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침해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청구를 마련하고 이를 서비스 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응 할 수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예방 의무 및 면책요건에 대하여, 보호원에서 발간한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제4장 제2절 '누리집에서의 저작권 보호'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 : 보호원 누리집 → 정보자료 → 자료실

관련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조(저작권),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Q34 keyword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

어느 블로그가 국내 TV에서도 방영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매주 불법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로그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침해 당사자, 즉 저작권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기업과 같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의 범주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고, 제3자는 신고할 수 없어서 뻔히 불법복제물이 있는데도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A focus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방법

가. 저작권법 제103조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블로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운영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보신 신고절차는 위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블로그서비스운영자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를 비롯한 권리자만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권리자에게 권리침해 불법복제물을 제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저작권자가 일일이 개별 불법복제물들을 발견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불법복제물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의 위임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복제물의 온라인상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페이지 'COPY112'를 통하여 누구나 불법복제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신고하신 게시물을 조사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것을 시정 권고합니다.

- 문의주신 불법복제물 블로그 게시물을 아래의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면, 저희 보호원이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시스템 COPY112: <https://www.copy112.or.kr/>

관련 법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3장
저작권 보호 심의 사례



저작권 보호 심의 사례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에 소개된 심의 사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정권고를 의결한 내용을 이야기로 각색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로 전환된 블로그 애니메이션 게시물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김애니씨는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A블로그에 자주 들른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구독하고 있는 OTT서비스를 통해 정식으로 볼 수 있지만, 마냥 기다리자니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 방송 하루 만에 방송 내용 그대로 직접 스트리밍을 해주는 A블로그의 신세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A블로그에 가니 올라와 있어야 할 최신 화는 물론, 이전에 방송된 분량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놀라서 다른 게시물을 클릭해 보니, A블로그의 운영자인 이공유씨가 “저작권 신고가 많아 애니메이션 모두 서로이웃공개로 돌렸습니다. 조용히 꼭 보고 싶으신 분들만 서로이웃 신청해 주세요.”라는 공지를 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블로그 게시 글의 열람 제한 기능인 ‘서로이웃’ 기능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게시 글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막연히 불법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굳이 서로이웃 신청까지 해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아야 할지 이 제야 조금 고민이 되었다.

요즈음은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일본 현지 방송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어 자막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각종 OTT서비스들을 통하여 방영되는 작품도 있고, VOD서비스에서 회당 몇 백원 가량을 주고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개인이 블로그를 통하여 스트리밍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복제,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외국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국내 방영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러한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게시물은 권리자가 게시하는 OTT 및 VOD서비스에 의한 제공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애니메이션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공유씨와 같이 서로이웃 또는 아예 비공개로 게시물을 전환하였다면 불법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일까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의 심의를 요청하는 불법복제물들은 보호원의 관련 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이 실제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가 있는지, 시정권고에 의하여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와 같은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물론, 혹시 불법복제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 사실관계 또한 검토합니다.

보호원이 신고 또는 자체 조사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은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 처리되거나, 서로이웃공개 등으로 공개설정이 변하거나, 또는 아예 삭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시 이미 삭제·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삭제 등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의결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순히 서로이웃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에 불과한 게시물은 서로이웃으로 한정된 자들에게 계속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다시 전체공개로 전환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게시자가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외국 만화 게시물

김영웅씨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인 ‘히어로유니버스’의 팬이다. 김영웅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화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은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캐릭터상품 등 그야말로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다. 김영웅씨는 처음에는 남들처럼 영화로 히어로유니버스에 입문했다가, 관련 콘텐츠를 탐구한 끝에 1970년대에 발간된 옛날 연재만화에까지 관심이 닿게 되었다.

히어로유니버스의 제작사는 몇 년 전 만화 감상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옛 연재만화를 디지털로 복원해 호당 2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달러라는 화폐단위에서 알 수 있듯 모두 영문판이다. 국내의 한 출판사가 히어로유니버스의 출판물 모두를 독점 계약하여 번역출간하고 있지만, 해당 시리즈는 수요가 모자란 지 번역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김영웅씨는 시리즈의 설정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홀로 만화를 읽어나갔다. 만화 감상을 시작한 지 반년쯤 되자,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깊고 재미있는 세계를 국내 팬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김영웅씨는 만화를 고화질로 캡처하고, 대사를 번역한 다음 말풍선 안에 깔끔하게 편집해 넣었다. 영어 실력이나 편집 실력은 조금 미흡하지만, 애정과 지식을 담아 번역했으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어 매주 한 호씩을 블로그에 무료로 공개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자 히어로유니버스의 팬들이 모여들어 댓글란이 북적북적해졌고, 김영웅씨는 ‘덕질’에 모처럼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독자가 비밀댓글로 알려준 바에 의하면, 히어로유니버스의 제작사는 자사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복제, 배포 및 번역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웅씨는 개인 취미로만 번역과 공유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싶지도 않은데도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정성 들인 번역 글을 모두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뒤늦게 고민에 빠졌다.

콘텐츠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콘텐츠의 바다에서 개개 작품들이 빨리 잊히는 듯 하다가도, 옛날 음악이 갑자기 발굴되어 차트에서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추억의 영화들이 리메이크, 리부트되기도 하고, 웹툰, 드라마, 게임까지 동시에 기획, 제작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는 문화산업전략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씨의 행위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및 2차적저작물로 작성(번역)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취미이기는 하지만, 블로그에 공개하여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였고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복제, 배포 및 번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모두 당연히 보호원의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불법복제물이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작사가 보호원에 직접 저작물 보호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70년대에 발간되어 국내에 번역되지도 않은 오래된 저작물에 과연 합법시장이 있는지, 김영웅씨의 번역물이 해당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제작사는 오래된 만화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발행하여, 자사의 다른 영화, 드라마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해당 만화들은 단지 50년 전의 옛날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과 연계되어 현재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콘텐츠로, 물론 김영웅씨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씨가 본인의 창작성과 노력을 더하여 번역물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하기는 하였으나, 제작사의 저작권권을 침해하고 국내 출판사를 통한 합법 번역물 발간을 오히려 방해함으로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하게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외에도 그림 부분에 대한 복제,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식 우리말 번역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 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영화관에서 '도촬'한 영상 불법복제물

신하얀씨는 일본의 유명 아동만화 '못말리는 친구'의 팬이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신하얀씨처럼 만화와 함께 자라온 어른들이 자녀와 함께 보기도 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팬이 많다.

일본에서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난 최신 극장판이 코로나19로 뒤늦게 한국에 개봉하자 신하얀씨는 뭇 듯이 기뻐 바로 표를 예매했다. 이미 VOD로 구매해 보긴 했지만, 극장에 오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새로 제작된 한국어 더빙 또한 '덕후'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도 신하얀씨 말고는 아무도 극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극장에 사람이 없다지만, 온 극장에 신하얀씨 한 사람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다. 신하얀씨는 황당한 한편 좀 들뜨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신하얀씨는 이 재미있는 상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한 기대하던 한국어 더빙 판을 보러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빙을 들려주고자, 핸드폰을 켜서 영화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관객이 없으니 잡음으로 방해 받을 일이 없었다.

신하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혼자 극장 전세낸 썰'과 함께 녹화한 영상을 올렸다. 전체 영상 외에, 쿠키 영상이나 하이라이트는 보기 편하도록 따로 편집하여 올리기도 했다. 영상은 핸드폰으로 극장 스크린을 찍은 것이라 사방에 검은 여백이 있고 자주 흔들리기도 했지만, 화면과 소리를 알아보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신하얀씨의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 즉 VOD로 제공되는 영화 파일을 올려놓은 것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영화관에서 직접 영화를 녹화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30조(사적복제)와 달리 개인소장 목적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수행위, 즉 녹화하려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영화의 '도촬' 행위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극장개봉과 VOD출시, 블루레이 디스크 발매 등 출시 창구별로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대용 영상촬영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극장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무단으로 녹화되어 유포되는 경우 권리자의 손해가 막대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으로 이를 특별히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화관객의 저작권 의식이 발달하고 영화의 출시 창구가 다양해져

이러한 ‘직캠본’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직캠본이 불법 유통될 경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상저작물의 거의 전체 분량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이 특별히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도촬’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점,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화질과 음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물

오윤주씨는 라디오 애청자이다.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대에 라디오라니 시대착오 같기도 하지만, 라디오는 단지 흘러간 매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성이 뚜렷한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오윤주씨가 처음부터 라디오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최애’ 연예인이 DJ를 맡은 심야 프로그램을 듣다가 라디오에 정을 붙인 지 벌써 몇 년 째이다. 좋아하는 다른 DJ들도 생겼고, 이제는 드라마도 종종 듣기 시작했다. 화면이 없이 성우의 목소리와 음악, 효과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라디오 드라마는 TV와는 전혀 다른 맛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며 듣다가도 눈을 감고 빠져들게 될 때가 있다.

방송사에서는 라디오 드라마의 다시듣기를 공식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주 방송된 드라마를 틀어놓고 홈페이지를 구경하던 오윤주씨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작은 게시판을 발견했다. 다시듣기뿐만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의 대본이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듣는 드라마의 대본을 찾아 읽어보니, 녹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감정 표현과 효과음의 지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드라마에서 그 지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감상이 두 배로 풍부해지는 느낌이었다.

신이 난 오윤주씨는 대본을 읽으며 드라마를 두 번이나 더 들었다. 대본 맨 위로 세 번째 스크롤을 올리고 나니, 문득 방송사 홈페이지가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페이지 모양이 좀 투박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윤주씨가 대본 게시판을 발견하는 데만 한 달도 넘게 걸렸던 것이다. 오윤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대본을 옮겨놓으면 오윤주씨 본인도 편하게 읽고, 방문자들도 라디오 드라마의 매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작품을 무단 전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잠깐 들었지만, 어차피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도 같았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문저작물인 극본이 필요합니다. 작가가 창작한 극본을 제작진이 모여 드라마로 만들어냅니다. 극본을 TV드라마로 제작하면 영상저작물, 라디오드라마로 제작하면 음반이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감상하도록 ‘방송’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 다시보기 또는 다시듣기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저작권법상 ‘전송’이라고 합니다. 즉 극본과 드라마는 서로 별개의 저작물이며, 드라마는 극본에 대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송사는 녹음된 라디오 드라마와 그 극본을 모두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오윤주씨가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드라마와 극본을 감상하는 것은 방송사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오윤주씨는 이미 무료로 공개된 극본이므로 자신이 복사해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상과 달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전송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VOD서비스에서 구매한 드라마 파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나 음악이 아닌 어문저작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구매 등 별다른 조건 없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고 해서 무분별한 복제·전송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극본을 무료로 공개한 방송사의 의도를 되짚어 보면, 라디오 드라마의 애청자들이 좀 더 즐겁게 다시 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인 읽기 서비스를 제공할 뿐, 드라마 작가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사해 가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오윤주씨가 극본을 편하게 읽기 위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극본 전체를 무단 복제하는 대신, 방송사 게시판의 URL 링크만을 복사해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극본은 드라마와 별도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받는 점, 비록 저작물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취지가 아니며, 오로지 방송사 홈페이지라는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드라마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불법복제물을 보내줄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게시물

김하나씨는 몇 년 전 한 일본드라마를 보고 주연배우의 팬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배우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잘 수입되지도 않고 정보도 거의 없었다. 그동안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자료를 구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김하나씨는 우연히 팬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바로 가입했다. 한국에는 ‘덕질’ 동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팬카페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새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몇 시간 안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며 김하나씨는 감동마저 느꼈다.

등업처리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김하나씨는 등업이 완료되자마자 ‘드라마’ 게시판에 접속했다. 얼마 전부터 일본 내 방영되고 있는 최신 드라마 소식을 잔뜩 읽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게시판의 내용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글쓴이 한 명이 “1화(자막완)”, “2화(자막완)”... “7화”라는 간단한 제목의 글만을 게시하고 있었고, 그 밑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게시글을 하나 클릭해 보니, 드라마 포스터와 함께 적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2021. X. X. 방영된 7화입니다. 댓글로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그럼 즐기세요~

댓글에는 이메일 주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줄줄이 달려 있었다. 중간 중간 글쓴이의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말에 확인할게요~”와 같은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게시물에는 거의 아무 내용 없이 달랑 포스터뿐이었지만, 이메일을 통해 영상 파일을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김하나씨는 ‘이거 완전 불법복제물 유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파일 하나쯤 개인 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카페 사이트의 동영상 기능을 활용해 웹상에서 바로바로 보게 하는 것과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진 것이다. 한편 메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 보니, 글쓴이가 댓글의 이메일 주소들에 정말로 드라마를 보내 주었는지 문득 의심이 갔다. 금전적 이익을 좇으며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범죄가 유행중인데, 메일주소도 거짓으로 수집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영상저작물인 드라마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해외 드라마라도 국내 드라마와 동일하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드라마의 복제·전송뿐 아니라 자막제작(번역) 또한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의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보호원의 관련 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이 실제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 시정권고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김하나씨가 본 카페 게시글 자체에는 드라마 파일도, 스트리밍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하나씨가 이를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로 의심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에 의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해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일 댓글에 “왜 안 보내 주세요? 사기인가요?” 등의 댓글이 발견되었다면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법복제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전송’에 해당할지도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은 공중, 즉 여러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것인데, 김하나씨의 생각처럼 이메일은 원칙적으로는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이 개별 이메일이더라도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하나씨가 본 게시글 자체는 아무 내용이 없어 불법복제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의 전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보호원의 시정권고의 대상 중 하나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것을 알리고 있고, 실제로도 다수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댓글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부록

보호원이 궁금하다 및
기관별 주요 상담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궁금하다 10문 10답

1 (열린상담실)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에서는 민원인을 비롯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번호를 통해 영업시간 내 상담을 제공하며,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편히 문의주시면 내부 검토 후 답변을 드리며, 이외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주시면 대면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사항, 저작물의 판단 및 민·형사상 소송관련, 계약서 검토 등 법리를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문의 방법은 120면을 참조

2 (COPY112) 보호원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을 신고하실 수 있는 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페이지 (<https://www.copy112.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신고페이지의 “불법복제물 신고” 메뉴에서 저작물명, URL, 신고내용 등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불법복제물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작물의 권리자이신 경우 저작권(사)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정확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인 제보이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은 신고해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의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하여 해당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반복적인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보호원에 신고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인의 정보는 외부로 제공되지 않으니 건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3 (디지털포렌식) 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르의 디지털 콘텐츠(영화, 방송, 음악, 웹툰 등)를 감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스트리밍, 웹하드 등 침해유형마다 그 기술과 방법이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방송, 영화, 음악, 웹툰 등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 등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안심)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콘텐츠를 창작 또는 계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판매·유통·이용하는 서비스와 매장을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여 정품 콘텐츠 유통을 응원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은 주로 내국인 이용을 대상으로, ‘Copyright OK’는 주로 외국인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매장을 말합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에는 지정서와 온라인 게시용 지정마크를 부여하고, 매장의 경우에는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정사가 되면 저작권과 관련한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원의 홍보채널을 통해 지정사를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 보호원에서 발간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보호원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매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안심 뉴스레터’를 발송해 지정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시정권고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는 보호원에 설치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로 위촉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각각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원은 먼저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고,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 안건으로 부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OSP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것을 의결합니다. 보호원이 권고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내용은 ①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그리고 ③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입니다.

만일 OSP가 위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원은 심의위원회의 재차 심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2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부담을 경감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통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저작권 교육영상) 보호원 교육영상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전문가(변호사 등)가 출연하는 저작권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보호원 유튜브 채널(KCOPA TV)을 통해 교육영상을 제공 중에 있으며, 수시로 추가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자료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에 접속하여 시청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SW 순회교육) 공공기관 SW 순회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통령령 제296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3교시 240분으로 구성되고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통상 5월~9월 중 진행합니다.

2022년부터 오프라인 교육(18회, 1회 100명 정원) 및 온라인 교육(상시교육 약 3개월)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 및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보호원 홈페이지(info.kcopa.or.kr) 및 공문발송을 통해 신청방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및 성인 초범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위 기소유예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저작권 교육을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의 내용은 저작권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일 8시간, 총 6개 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국 권역별 집합교육과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인스펙터) PC 내 SW를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 배포하는 SW 점검프로그램(Inspector)은 PC에 설치된 SW를 검색하여 사용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점검결과와 보유 라이선스를 대조하여 조직에서 구입 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조치할 수 있으며 SW점검 현황 표를 출력하여 이력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 홈페이지(<http://info.kcopa.or.kr>)에서 인스펙터 및 사용매뉴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해외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방송 등 해외 불법 유통이 빈번한 주요 콘텐츠를 중점 저작물로 지정하여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를 통한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URL삭제 등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통해 민간 권리자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성과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문의해 주세요



기관별 주요 상담 내용

기관명	누리집	전화번호	주요 상담 내용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	https://www.copy112.or.kr	1588-0190	불법복제물 신고
한국SW저작권협회	https://www.spc.or.kr	02-567-2567	SW 불법복제물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1800-5455	저작권 등록·감정·분쟁 조정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	02-2660-0400	(음악)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scap.or.kr	02-333-8766	(음악)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02-3270-5900	(음반)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s://www.fkmp.kr	02-745-8286	(음악실연)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http://www.kolaa.kr	02-2608-2800	(어문, 수업목적 보상금)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영화제작가협회	http://www.kfpa.net	02-2267-9987	(영화)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	02-2001-7114	(뉴스)저작물 사용·양도·신탁 등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02-3153-2820	공공저작물 관리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s://www.grac.or.kr	051-720-6800	불법게임물, 사설서버 게임 신고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051-720-4700	영화·영화인·영화사 등 영화DB검색
특허청	https://www.kipo.go.kr	1544-8080	상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산업재산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https://www.ippolice.go.kr/bp/main/main.do	1666-6464	상표(위조상품),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	02-2183-5800	위조상품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국번없이 118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국번없이 1377	해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터넷상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 등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044- 203-2000	저작권 표준계약서 배포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1588-2594	콘텐츠분쟁조정 신청(콘텐츠 이용 결제 환불 등)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043-880-5500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Memo

Memo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전화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번호 1588-0190으로 전화 후
“6번-저작권 보호상담”을 선택해 주세요.

※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온라인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www.kcopa.or.kr에 접속 후
“국민참여-저작권 보호상담”을 통해 상담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처리기간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대면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주세요

※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국내 이용자를 넘어 해외 이용자까지
합법콘텐츠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저작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BI 소개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및 관련 문의 ☎ 02-3153-2724

* 본 사례집은 저작권 안심 지정사업 운영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 발행** 2021년 12월
- 발행인** 박주환
- 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 집필** 이숙형(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사무처장)
김태일(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사무처)
오진해(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사무처)
- 자문** 법무법인(유) 지평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 하병현 변호사
- 감수**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호흥 명예회장
법무법인(유) 지평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 하병현 변호사
-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4·9·10층
- 연락처** 1588-0190
- 누리집**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
- 인쇄처** 사단법인 에스디워크 (031-949-4565)
-